

제 7 장

미나마타병문제 해결에로 몰두

해결안의 제시와 관계자간의 합의

미나마타병문제는,미나마타병 피해자가 재판과 쯏소와의 자주협상에 의해 구제를 요구하는 등 분쟁상태가 계속되어 있었지만,도쿄지방법판소는 1990년9월 , '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하여,서로 의논할 수 밖에 없다'라고,미나마타병사건 역사상 처음으로 화해를 권고하였습니다.그 후,각 재판소에서 잇달아 화해권고를 하였지만,화해와 자주협상으로 해결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어,미나마타병문제의 해결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미나마타병 피해자의 고령화도 추진되고 '살아있을 때 구제를'라는 목소리가 높아져,1994년10월부터 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해결을 도모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져서,12월에 여당3당은 미나마타병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1995년에 들어서서,피해자단체,구마모토현,관계부처 등 관계자간의 조정이 추진되어, 9월28일,관계자의 의견에 입각하여,여당3당에 의한 미나마타병문제에 대한 최종해결안이 제시되어,12월까지 관계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합이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 (1)미나마타병에 관한 여러가지 분쟁에 대하여,아래와 같은 초기에 최종적이면서도 전면적인 해결을 도모한다
  - ①원인기업은,구제대상자(현재 종합대책의료사업의 상대로 되는 자 등)에 일시금(260만엔)을 지불한다.
  - ②국가 및 구마모토현은,미나마타병문제의 최종적이면서도 전면적인 해결에 있어서, 유감의뜻등 어떠한 책임있는 태도를 표명한다.
  - ③구제를 받는 자는,분쟁(소송,자주협상,인정신청,행정불복심사청구및 행정소송)을 취소하는 등 행동으로 종결시킨다
- (2)국가및 구마모토현은,분쟁종결시,종합대책의료사업의 지속및 신청접수재개,쯏소지원,지역재생,진흥을 위해 시책을 진행한다.

정부에 의한 해결책의 실시

1995년12월15일,관계당사자간의 합의에 입각하여,국가가 진행하는 시책을 정한 최종 해결책을 내각회의에서 승낙을 받음과 동시에,내각총리대신담화를 발표하여,이런 시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자료참조

협정체결에 의한 분쟁종결

1996년2월부터 5월까지,합의에 근거하여,피해자5단체 각자와 쯏소사이에,일시금지불과 분쟁종결의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동년 5월,협정체결을 받아,구마모토,후쿠오카,오사카,교토,도쿄의 3고재 4지재에서 싸워 온 간사이소소를 제외한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은,원고와 쯏소의 화해,원고에 의한 국가와 구마모토현에 대한 소송 취소로 결착되었습니다.



피해자단체와 쯏소와의 협정체결 (미나마타시 중앙공민관)



피해자단체와 쯏소와의 협정체결 (미나마타시 체육관)

표6 최종해결책이후 종결진 미나마타병에 관련된 소송

소 송 명	원 고 수	소송물의 가격	비 고
3차1진 소송(고소심) (후쿠오카고등재판소)	133명 본인원고 63명	약6억4570만엔	1980. 5. 21 구마모토지방법재판소에 고소제기 1987. 3. 30 제1심(구마모토지재)판결 '국가, 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 1987. 4. 8 국가 및 현고소(4.9짓소 고소) 1990.10.12 화해관고(화해협의 실시) 1993. 2. 5 결심 '판결일은 후에 지정' 1996. 5. 22 1심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
3차2진 소송(고소심) (후쿠오카고등재판소)	241명 본인원고117명	약7억9640만엔	1981. 7. 30 구마모토지재에 고소제기 1990.10. 4 화해관고(제1심 화해협의 실시) 1993. 3. 25 제1심(구마모토지재)판결<국가, 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 1993. 4. 7 국가 및 현고소, 짓소고소(1993.4.8 현고고소) 1996. 5. 22 1심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
3차3진 소송 (제3-16진) (구마모토지방법재판소)	1272명 본인원고1183명	약234억2340만엔	1985. 3. 25 구마모토지재에 고소제기 1990.10. 4 화해관고(화해협의 실시) 1996. 5. 22 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
도교 A호 소송(고소심) (도교고등재판소)	74명 본인원고64명	12억6720만엔	1984. 5. 2 도쿄지재에 고소제기 1992. 2. 7 제2심(도쿄지재)판결 '국가, 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 1992. 2. 14 원고고소 1996. 5. 23 1심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
도교 B호 소송(제1심) (도쿄지방법재판소)	428명 본인원고364명	72억720만엔	1984. 5. 2 도쿄지재에 고소제기 1990. 9. 28 화해관고(화해협의 실시) 1996. 5. 23 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
교토소송분리분(고소심) (오사카고등재판소)	49명 본인원고46명	9억1080만엔	1985.11.28 교토지재에 고소제기 1990.11. 9 화해관고(제1심) 1993.11.26 제1심(교토지재)판결 '국가, 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 1993.12. 9 국가 및 현고소, 짓소고소(1993.12.10 원고고소) 1996. 5. 22 1심원고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
교토소송(제1심) (교토지방법재판소)	103명 본인원고101명	19억9980만엔	1985.11.28 교토지재에 고소제기 1990.11. 9 화해관고 1996. 5. 22 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
후쿠오카소송(1진-5진) (후쿠오카 지방법원)	49명 본인원고49명	9억7020만엔	1988. 2. 19 후쿠오카지재에 고소제기 1990.10.18 화해관고 1996. 5. 22 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
취 소 소 송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1명 본인원고1명		1978.11. 8 구마모토지재에 고소제기 1986. 3. 27 제1심(구마모토지재)판결 '현의 인정신청기각처분을 취소' 1986. 3. 29 고소(1심피고) 1996. 2. 28 구마모토현지사사 대한 고소취소(3명) 1997. 3. 11 제2심(후쿠오카고등재판소)판결 '가고시마현의 인정신청기각처분을 취소'
간사이소송(상고심)	68명 본인원고45명 항소심판결시 97명 본인원고58명	약8743만엔 제2심국가 및 현 용인액 약18억9600만엔	1982.10.28 오사카지재에 고소 1992.12. 7 화해관고 1994. 7. 11 제1심(오사카지재)판결 '국가, 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 1994. 7. 25 원고고소(짓소고소1994.7.22) 2001. 4. 27 제2심(오사카지재)판결 '국가, 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 2001. 5. 11 국가, 현 상고의 제기 및 상고수리신청 2001. 7. 6 1심원고부대상고의 제기 및 부대상고수리신청 2004.10.15 상고심판결에서 최고법원행정책임을 승인
인정지체비용 소송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37명 본인원고21명	약669만엔 청구금액은 제2심용인액	1978.12.15 구마모토지재에 고소제기 1983. 7. 20 제1심(구마모토지재)판결 '국가, 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 1983. 8. 1 현고소(국가고소1983.7.21) 1985.12.12 현고소(국가상고1985.12.4) 1991. 4. 26 상고심(최고재판소제2소법정)판결 '파기환송' 1996. 9. 27 반려심(후쿠오카고등재판소)판결 '국가, 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 1996.10.10 1심원고상고 2001. 2. 13 (재)상고심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판결 '상고기각'

(<2003년반 구마모토현 환경백서> 구마모토현으로부터 일부가됨)

表 7 係争中の水俣病に係る訴訟

H20. 2. 6 現在

소 송 명	원 고 수	소송물의 가격	비 고
노 모아 미나마타 국가배상등 청구소송 (구마모토지방법재판소)	본인원고 1,472명	125억1,200만엔 (1인당 850만엔)	2005.10. 3 제1진이 구마모토지방법재판소에 고소제기 2007. 7. 3 제1진부터 8진까지 병합심리 2007. 8. 28 제9진이 구마모토지방법재판소에 고소제기 2007.10.11 제10진이 구마모토지방법재판소에 고소제기
국가배상등청구소송 (구마모토지방법재판소)	본인원고 9명	2억2,800만엔 (1인당 1,600만엔 ~ 1억엔)	2007.10.11 구마모토지방법재판소에 고소제기
니이가타미나마타병제3차소송 (니이가타지방법재판소)	본인원고 12명	1억4,400만엔 (1인당1,200만엔)	2007. 4. 27 니이가타지방법재판소 고소제기
미나마타병 인정신청기각처분취소 · 인정의무 청구소송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본인원고 1명		2001.12.20 구마모토지방법재판소에 취소 고소를 제기 2005.10.28 구마모토지방법재판소에 의무를 지우는 고소제기 2008. 1. 25 구마모토지방법재판소판결 '취소고소 기각, 의무를 지우는 고소 기각' 2008. 2. 6 원고항소
미나마타병인정신청기각 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오사카 지방재판소)	본인원고 1명		2007. 5. 16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
미나마타병인정의무등 청구소송 (구마모토 지방재판소)	본인원고 2명		2007. 5. 18 구마모토지방법재판소에 고소제기

※原告数には、承継人も含む。

※本人原告とは、水俣病リ患の有無を争っている(取消、待ち料については申請者)本人のこととする。

## 구제대상자

현재 종합대책의료사업의 대상자(구마모토현 3374명,가고시마현 873명),새롭게 종합대책 의료사업의 대상자(구마모토현 3851명,가고시마현 1340명)및 종합대책 의료사업대상자였으나 사망된 자(구마모토현 162명,가고시마현 59명)및,새롭게 인정받은 사망대상자(구마모토현 605명 가고시마현 89명)을 합쳐 일시금의 지급을 받은 구제대상자는 구마모토현 7992명,가고시마현 2361명 합계 10353명으로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사망자를 제외한 9438명은 종합대책의료사업의 의료수첩의 대상자로 되어,의료비 등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또,일시금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사람들 중1187명(구마모토현 842명,가고시마현 345명)은 침구 시술의료비 등을 지급받게 되는 보건수첩의 대상자로 되었습니다.

또한,국가와 구마모토현의 행정책임을 확정한 2004년10월의 미나마타병간사이소송 최고재판소의 재판을 받고,미나마타병미인정환자에 대하여 새로운 구제사업으로써,2005년10월부터 신 보건수첩의 신청접수를 개설했습니다.신규신청하여 고부된 자는 2007년3월말현재 9068명(구마모토현 7321명 ,가고시마현 1637명,니이가타현110명)입니다.